

정밀안전점검 용역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	--	--------	---

계약내용	용역명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2026년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계약금액	일금 삼천만원(₩ 30,000,000/부가세별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100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과업종료일까지('26.06.10)
	기타사항	

발주자 화성도시고속도로(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입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불입서류 : 1.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 내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발주처 ["갑"]	상호	화성도시고속도로(주)	대표자	이영주(인)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비봉매송로 479		
	계약대상자 ["을"]	상호	(주)명성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번호	176-87-00064
		대표자	김선무(인)	전화번호	031-886-7422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301호		

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갑”과 “을”은 정밀안전점검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중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을”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정밀안전점검을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갑”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②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통지 등)

-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 (채권양도)

- ① “을”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정밀 안전점검 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

- ① “을”은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times 10/10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인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서(서울보증보험)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을”은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을”에 귀속된다.
- ②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8조 (선급금 보증)

“을”은 선급금 수령 시 ‘선급금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을”의 근로자)

- ① “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③ “을”은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를 ‘과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 ① “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 ② “갑”이 감독을 한다고 해서 “을”의 용역수행에 관한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제11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 ① “을”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과업지시서 3. 과업수행일반지침에 따라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④ “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휴일 및 야간작업)

“을”은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과업내용의 변경)

- ① “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특정용역항목의 변경
 2. 용역 공정계획의 변경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시 “갑”은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을 변경한다.
- ③ “을”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갑”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제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갑”과 “을”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16조 (지체상금)

-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경우에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할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산출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의 수행기간 이후에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제17조 (계약기간의 연장)

- ① “을”은 제16조 제3항의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조정한다.

제18조 (검사)

- ① “을”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을”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을”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수)

- ① “갑”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 시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0조 (일반적 손해)

- ① “을”이 계약의 수행중이거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기간 내 용역 미 완수
 - 2.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 3. “을”이 수행한 용역의 하자로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손해발생시 “을”의 귀책사유가 1호 및 3호 시에는 계약금액을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 (불가항력)

-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정밀안전점검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대가의 지급)

- ① 용역대가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금 액	지급조건	비 고
준공금	‘26년 해당분의 100%	2026년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이 완료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지급	
계	33,000,000원	VAT포함	

- ② “을”은 “갑”에게 용역결과물을 제출한 이후, 제1항의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을”의 내부 자금결제지급 기준에 의해 입금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급기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 는 없는 것으로 한다.)
- ③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잔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갑”은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23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 ④ “갑”은 선금에 대한 미정잔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잔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②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용역의 일시정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갑”의 필요에 의하여 “갑”이 지시한 경우

-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을”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 ① “을”은 계약서상의 규정의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8조(안전관리)

- ①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본 조사지역의 각종 안전시설은 현지여건에 따라 “을”의 책임 하에 설치하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부, 임대장비는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본 용역 시행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이 경우 제1심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으로 한다.
-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4



화성도시고속도로(주)

목 차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 가. 대상시설물
 - 나. 과업의 범위
 - 다. 과업기간
3. 과업수행 일반지침
4. 과업수행
 - 가. 과업의 수행
 - 나. ~~적용기준~~
5. 보안대책
6. 안전관리
7. 기타사항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시설물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 평가 및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제시 등 시설물의 재난예방과 안정성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 (1,2종)

교량 : 6개소, 절토사면 : 8개소, 옹벽 5개소

○ 교량

구분	교량명	연장 (m)	최대 경간장	교폭 (m)	구조형식			종별	비고
					상부	교대	교각		
1	남전천교	100	50	20.9	V-BEAM	역T형	T형	1종	
2	양노교	60	60	26	HIPC GIRDER	역T형	—	2종	
3	양노1교	200	50	21.24	V-BEAM	역T형	π형	1종	
4	양노2교	60	40	20.9	HIPC GIRDER	역T형	—	2종	
5	쌍학교	250	50	21.07	V-BEAM	역T형	π형	1종	
6	천천교	394	69	21.07	PUS GIRDER	역T형	π형	1종	

○ 절토사면

구분	위치	연장(m)	높이(m)	종별	비고
1	STA0+253~0+702(좌)	449	32.3	2종	
2	STA0+281~0+716(우)	435	37.3	2종	
3	STA2+690~3+090(좌)	400	38	2종	
4	STA2+724~3+000(우)	276	38.7	2종	
5	STA3+310~3+830(우)	310	39.3	2종	
6	STA4+140~4+590(좌)	315	32.6	2종	
7	STA4+931~5+160(우)	229	32.5	2종	
8	백학IC R-D STA0+560~0+756(좌)	156	30	2종	

○ 용벽

구분	위치	연장(m)	높이(m)	종별	비고
1	STA0+742~802(우) 보강토	172	8.3	2종	
2	STA5+160~385(좌) 보강토	234	7.9	2종	
3	STA5+255~563(우) 보강토	311	7.7	2종	
4	STA5+574~610(좌) 보강토	256	11.7	2종	
5	STA5+694~860(좌) 보강토	283	8.5	2종	

다. 과업의 범위

- 1) 자료 수집 및 분석
- 2) 현장조사 및 시험
- 3) 정밀점검(육안점검, 시험 및 측정, 외관망도 작성 등)
- 4) 점검결과 검토 및 분석
-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6) 보수·보강방안(공법, 우선순위 및 시기) 제시
-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8) 보고서 작성(부록포함)
- 9) 점검결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전산입력(FMS) 및 승인

라.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06. 10.

마. 점검시기 : 2026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한다.

구분	대상		비고
계약체결일 ~ 2026.06.10.	정밀안전점검	교량 6개소(1종 4개소, 2종 2개소), 절토사면 8개소(2종 8개소) 용벽 5개소(2종 5개소)	점검도래시기 : 2026.06.10. FMS입력기한 : 2026.07.10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 계약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과업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당사(이하, '갑'이라 칭한다) 또는 당사가 임명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1)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추진일정
- 2)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3)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자 자격현황
- 4) 과업수행을 위한 시험기구의 검교정 현황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 5)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 6) 안전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
- 7)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다.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당사에 제출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을'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매일 업무일지(별첨#1)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을 기준하여 업무보고서(별첨#2)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1) 착수계
- 2)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 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 4) 예정공정표
- 5) 인원투입계획서
- 6)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마. 월말 업무보고서 제출시 참여기술자는 필요시 상호 과업회의에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현안문제 및 주요사항을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갑'이 투입된 기술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내우외환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2) 당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3)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경우
- 4) 기상이변(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경우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자.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재수행을 명시할 수 있다.

차. 본 과업의 수행기간 중 과업수행내용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기술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내용상 미비 및 과오 등의 결격사항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 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갑'으로부터 특별한 경우 용역성과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카.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문서의 내용에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을'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문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된 경우에도 '을'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파. 본 과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 본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안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정밀

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일 경우 “을”의 책임으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거. 본 용역은 2.과업의 개요 라.점검시기 맞추어 과업의 수행, 보고서 작성, 성과물 제출 등을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가. 과업의 수행

1)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① 정밀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②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 ① 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②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 ④ 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⑤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⑦ 과업 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3) 상태평가

- 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외관조사 결과와 시험·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손상의 진전여부를 확인 한다.
- ②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① 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 ②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5)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①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고속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 ③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 ④ 구조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향후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한 점검순서, 점검 중점유지관리 사항 등 맞춤형 점검메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

- ①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감독원과 협의 후 작성한다.
- ②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

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③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④ 점검결과 전산입력

· 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나. 적용기준

1)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 부재별 점검항목 및 점검요령

- 부재별 상태등급 산정절차 및 프로그램 등

5. 보안대책

가. 본 과업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제출시 첨부 하여야 한다. (별첨 #3, #4)

나. 본 과업계약자는 점검에 필요한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포함시키거나 정규직원외 직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한다.

다. 특별한 사유로 점검참여자가 교체될 시 사전에 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계약자는 용역관계자가 작업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해야하며 참여자 전원에게 이를 주시시켜야한다.

마. 본 과업계약자는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를 위해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면 정·부책임자 지정하여 이를 관리토록한다.

바. 본 과업계약자는 용역에 필요한 회의자료를 발생을 최소화하고 회의

후 이를 회수·파기하여야한다.

사. 본 과업계약자는 정해진 용역 성과품 이외의 추가물량 발행을 금지하여야하며 불량, 파지 등이 발생 시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한다.

아.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과업 성과품은 당사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목적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차.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과업 수행전에 책임기술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그 날의 점검항목과 점검 방법 및 그에 따른 불안전 요인, 대처방법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도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당사에서 제정한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의 발생은 전적으로 과업 수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라.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모, 안전화 및 필요한 경우 보안경, 개인용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차량에 대한 도로 통행은 당사에서 정하는 소정 절차에 따라 무료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을 위해서 기존 인터체인지 등 당 공사에서 지정한 유·출입로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을 해서는 안된다.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교통차단은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시행하며 교통차단 작업3일전까지 화성서부경찰서에 도로공사신고서를 제

출하여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작업전일 17:00까지 당 사에 교통 상황실에 교통차단계획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미시행시 작업을 순연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수행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하며, 점검수행 시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일정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결함부, 육안점검 전경 및 비파괴시험(기록지 및 현장지 등)의 실시전반에 관하여 촬영한 후, 사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2022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 2.과업의 개요 라. 점검시기 맞추어 과업을 각각 수행하여야 한다.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의 작성

- 1)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 2)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외관조사망도의 경우, "A3"크기로 작성한다.(보고서 SIZE 축소가능)

나. 납품목록

- 1) 최종보고서 : 3부
- 2) 외관조사망도(A3) : 3부
- 3) 손상물량표 및 사진대지 : 3부
- 4) 보수·보강 개요도(A3) : 3부
- 5) 1)~4) 수록 USB : 3SET
- 6) 기타 당 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하기로한 자료

업 무 일 지

작성일자 : 20 . . .

작 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 용 역 감 독 원 (인)

○ 용 역 명 :

○ 공 정 : 계 획 _____ %, 실 적 _____ %, 대 비 _____ %

1. 과업수행내용

금 일 실 적	명 일 계 획
	

2. 인력투입현황

구 분	작업인력		누 계	비 고
	기술자(고급기준)	인부		
투입인원				

3. 특기사항

()월 업무 보고서

【 용역명 : 】

작성일자 : 20 . . .

작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 “용역감독원” (인)

1. 공정현황

계 획(%)	실 시(%)	대 비(%)	용역기간	비 고

2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공 종	주요 작업내용	투입인원	비고
실 적 (○월)	현장조사			계 :
	내구성 조사			
	· · ·			
계 획 (○월)	현장조사			계 :
	내구성조사			
	· · ·			

3. 유관기관 협의 실적 및 계획

구 분	관련기관	협 의 내 용	비 고
실 적 (○월)	화성서부경찰서		
	수원국토관리소 화성지사 등		
계 획 (○월)	화성서부경찰서		
	수원국토관리소 화성지사 등		

4. 현 안 사 항

-
-
-

5. 건 의 사 항

-
-
-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게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화성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 하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과업수행자 전원 제출)

화성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 하

서지

2026년 3월 30일

주식회사 이도커뮤니케이션즈

2026년 상반기 비봉-매송간도시고속도로 시설물 정비안전점검영역

이금삼천만원정

(₩ 30,000,000) 부가세 별도

F A X : 031-707-7473

TEL : 031-886-7422

모지..출조

정기노조대신 야합노조 69번길 18,301호

(가) 명성엔지니어링

上記와 같이 見積書를 題出합니다

번 호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비	재 료 비				9,999,985	
2		노 무 비				9,999,985	
3		경 비				10,000,030	
4		소 계				30,000,000	
5	기타경비						
6	이윤 및 일반관리비						
공급가액						30,000,000	부가세 별도
부가세액						3,000,000	
총합계						33,000,000	부가세 포함

견 적 내 역 서

□ 2026년 상반기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No	품 명	규격	단 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액	단 가	액	단 가	액	단 가	액	
	직접비 계					9,999,985		9,999,985		10,000,030		30,000,000	
1. 정밀안전점검: 교량(6개소)													
1-1	남전천교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23	526,323	1,578,953	1,578,953	
1-2	양노교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23	526,323	1,578,953	1,578,953	
1-3	양노1교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23	526,323	1,578,953	1,578,953	
1-4	양노2교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22	526,322	1,578,952	1,578,952	
1-5	쌍학교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22	526,322	1,578,952	1,578,952	
1-6	전천교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22	526,322	1,578,952	1,578,952	
2. 정밀안전점검: 사면(8개소)													
2-1	STA0+253~0+702(좌)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2-2	STA0+281~0+716(우)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2-3	STA2+690~3+090(좌)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2-4	STA2+724~3+000(우)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2-5	STA3+510~3+820(우)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2-6	STA4+140~4+455(좌)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2-7	STA4+931~5+160(우)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2-8	백학(C R-D STA0+530~0+702(좌))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3. 정밀안전점검: 옹벽(5개소)													
5-1	STA0+742~802(우)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5-2	STA5+160~385(좌)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5-3	STA5+255~563(우)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5-4	STA5+574~610(좌)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5-5	STA5+694~860(좌)		회	1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526,315	1,578,945	1,578,945	

* 별도 산출 세부내역 첨부

견 적 내 역 서

□ 비봉매충고속도로 정밀안전점검(19개소, 상반기)

[단위: 원, 부가세별도]

항 목 / 구 분		내 역	산 출 근 거	연인원	단가 (원)	금 액 (원)
직 접 인 원 비	1. 현장조사	특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5	270,000	1,350,000
		고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5	250,000	1,250,000
		중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3	230,000	690,000
		초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6	210,000	1,260,000
		소 계				4,550,000
	2. 현장조사 자료 분석 및 평가	특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3	270,000	810,000
		고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3	250,000	750,000
		중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3	230,000	690,000
		초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6	210,000	1,260,000
		소 계				3,510,000
	3 보고서 작성 등	특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3	270,000	810,000
		고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3	250,000	750,000
		중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3	230,000	690,000
		초급기술자	실제 투입예정 인원	6	210,000	1,260,000
	소 계					3,510,000
계						11,570,000
항 목 / 구 분		산 출 근 거		단 가 (원)		금 액 (원)
직 접 경 비	보고서 제본비		실비		720,400	720,400
	일 비		실비		950,000	950,000
	숙박비		실비		950,000	950,000
	교통비		실비		500,000	500,000
	교통통제 및 고소점감차 비		실비		500,000	500,000
소 계						3,620,400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 (90%)				11,570,000	10,413,000
기 술 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21,983,000	4,396,600
총 계						30,000,000